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남산예정자락 재생사업(공원 및 주차장)]

□ 점검일시 : 2019.04.16 (화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박상종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목재 절단 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고속절단기는 회전수를 알 수 없는 목재 절단용 톱날의 사용을 금지하고, 화재 예방을 위하여 근접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 바람.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6(고속절단기)

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중장비 및 덤프트럭 등에 의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세륜 시설은 접지봉 없이 접지선만 설치되어 있으니 접지봉 설치 기준에 맞는 직경, 매설 깊이로 설치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(전기 기계기구의 접지)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8(기계기구 접지)



○ 전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오거크레인 아웃트리거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받침목은 장비 하중이 지반에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접지면적을 확보하고 천공중 발생한 물이 아웃트리거 하부로 유출될 경우 지반이 연약화될 우려가 있으니 유도배수를 하고 견고히 받침목을 설치하기 바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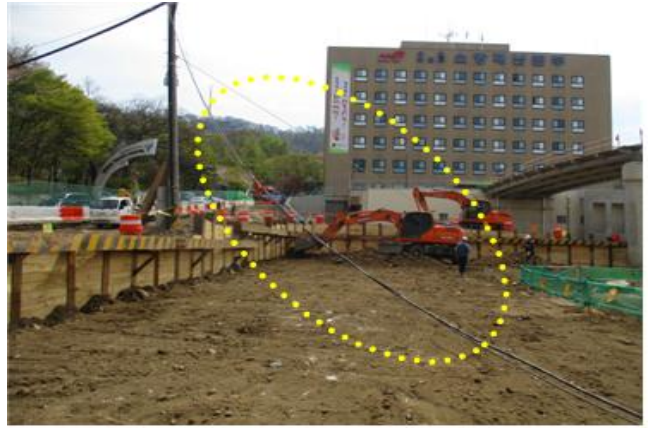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9(건설기계)



○ 감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전신주에서 지면으로 처져 있는 고압전선은 장비 작업 및 이동시 파손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장비 운전자 및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13조(배선 등의 절연피복 등)

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개구부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였으나 그 고정상태가 미비하여 덮개가 뒤집어지거나 이동할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보완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

○ 품질관리(방재시설부)

- 신설 도로의 배수를 위하여 설치한 빗물받이는 중장비 이동시 충돌에 의한 구조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운전원이 인지하기 쉬운 표시를 하여 관리하기 바람.



○ 전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주차장 가시설 천공 및 H파일 근입 후 주변에 발생한 빈 공간은 근로자 이동시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안전조치를 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